

<http://www.koreataekwondo.org>



대한태권도협회

수신 시도회원단체장

참조

제목 **도로교통법 알림 및 차량 안전운행 홍보 요청**

1. 관련: 도로교통법[시행 2019.4.17.][법률 제15807호, 2019.10.16., 일부개정]
2. 위와 관련,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보호자)의 의무와 차량 안전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표 및 Check List 등을 작성하여 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일선도장에 적극적인 홍보 요청 드립니다.

□ 요청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 과속, 급정지, 급차로 변경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 하차 시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
-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에 저학년을 문 옆에 앉지 않도록 하며, 좌석에 앉아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보호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
- 자동차 유리의 진한 선팅은 차량 안 탑승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법률 이상의 선팅은 제거 요망
※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일 경우 과태료 2만원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사전 방지.

□ 「도로교통법」 법률 일부 발췌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 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4. 1. 28.]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붙임 도로교통법 법률 1부. 끝.

사단법인 대한태권도협회



수신처

기안자  김선보

차장  장승중

부장  이종천

사무2처장  류호윤

사무총장

전결
06.03


최재춘

협조자

시행 도장사업부-발송-19-0515 2019.06.03

접수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내 101호 / 홈페이지 www.koreataekwondo.org

전화 02)420-4271~3

전송 02)420-4274 / 이메일 ksb812@koreatkd.kr

/ 공개